

# 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0년 11월15일

##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#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. 종류 C-i 수익증권의 신설
  -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  - 3.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변경 & 신설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 < 신설 > - 종류 C-i 수익증권 :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< 신설 > 종류 C-i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2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30% - 일반사무관리보수 : 연 0.0150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신설) 종류 수익증권의 신설(종류 C-i)
3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-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 -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0년11월 8일)

**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**

- 1. 종류 C-i 수익증권의 신설
- 2.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변경 & 신설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제3부>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제3부>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, 환매 및 전환 절차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 < 신설 >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< 신설 > 종류 C-i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2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30% - 일반사무관리보수 : 연 0.0150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2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- 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현황) - 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제4부 1. 재무정보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0년11월 8일)

**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**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. 종류 C-i 수익증권의 신설

항목	변경전	변경후
1. 종류 수익증권의 신설(계속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 생략 >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현행과 동일> - < 신설 > <a href="#">종류 C-i 수익증권</a> - <a href="#">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a> - <a href="#">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</a> - <a href="#">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a> - <a href="#">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</a>
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신설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생략 > 1. ~ 8. < 생략 > <신설>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생략 > 1. ~ 8. < 생략 > <a href="#">9. 종류 C-i수익증권</a>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에 따른 보수 적용	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8. < 생략 > <신설>	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8. < 생략 > < 신설 > 9. <a href="#">종류 C-i 수익증권</a> A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7.20 ]</a> B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0.20 ]</a> C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0.30 ]</a> D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 0.15 ]</a>